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. 8. 13 선고 2019가단46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9. 8. 13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4. 11. 18. 접수 제163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)

판사권형관

별지